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73

발의연월일: 2025. 1. 21

발 의 자:한민수·이학영·박민규

소병훈 · 김문수 · 임오경

박상혁 • 이건태 • 박용갑

이연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택, 오피스텔, 상가, 지식산업센터,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·감독할 법적·제도적 기반이미흡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
또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소비자 보호 등 행정적 필요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(68224)을 업종 세분류로 신설('24.1 시행)하고 있으나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아직까지 분양대행 및 분양대행업과관련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.

이에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·지원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 정한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 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양대행업 관련 실태조사, 통계·정 보 수집,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).

법률 제 호
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등의"를 ", 분양대행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"부동산분양대행업"이란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, 「주택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,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및 관리업무,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, 분양과 관련된 상담 업무, 분양 부동산의 판매전략수립 및 판매촉진 등 마케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.
- 6. "부동산분양대행업자"란 이 법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부동산서비스"란 부동산에 1. -----대한 기획, 개발, 임대, 관리, 중개, 평가, 자금조달, 자문,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 -----, 분양대행 등 다. 2. ~ 4. (생략) 2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5. "부동산분양대행업"이란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3호 의 부동산개발업자. 「주택 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 업주체, 「건축법」 제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대 신하여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 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업무, 부동산 공급계 약 체결에 관한 업무, 분양과 관련된 상담 업무, 분양 부동 산의 판매전략수립 및 판매촉 진 등 마케팅 관련 업무의 일 부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

	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
	<u>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6. "부동산분양대행업자"란 이
	법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
	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